| 투자 위험 등급<br>3등급(다소높은위험) |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삼성KODEX 적격TDF 2060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KODEX 적격TDF 2060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를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삼성KODEX 적격TDF 2060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fund.com)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4. 작 성 기 준 일 : **2026. 6.12**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 6.24**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10조좌입니다.]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2025년 7월 12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모집개시일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 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한국거래소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나. 운용자산별 종류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마. 특수형태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3. 모집 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나.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변경 내역
   다.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나. 종류형 구조
   다. 모자형 구조
   라. 전환형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나. 투자 제한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나. 수익 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가. 매입
나. 환매
다. 전환

12. 기준가격 산정 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다. 보수 및 지급내역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나. 과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가. 요약 재무정보
나. 재무상태표
다. 손익계산서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
나. 연평균 수익률 추이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나. 주요 업무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라. 채권평가회사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나. 잔여재산분배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라. 손해배상책임
마. 재판관할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증권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 해지
나. 임의 해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 보고서
    나. 수시 공시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가. 의무투자
    나. 투자목적의 투자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이 투자신탁과 같은 상장지수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되는 투자신탁이나, 이 투자신탁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전부해지 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9. **이 투자신탁은 투자자의 장기투자목적에 적합하도록 설계한 자산배분모델을 활용하여 글로벌주식 및 국내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분산투자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각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자산배분전략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배분전략이 시장의 움직임과 괴리가 생기거나 투자한 특정 자산의 손실이 커지는 경우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손실이 예측한 규모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 동 증권(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설명서 포함)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10.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설정 및 해지는 설정단위(CU: Creation Unit) 또는 그 정배수에 해당하는 자금(납입금등)을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이 투자신탁으로 납입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납입금등은 금전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신탁에 납입된 납입금등을 기초로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의 운용목적에 부합하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자산을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매매를 통하여 투자신탁내에서 구성하게 되므로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주식과 같은 실물을 납입금등으로 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신탁의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본 투자신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에 따른 액티브상장지수펀드로 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비교지수 수익률 추종을 목표로 하여 운용하는 ETF가 아니라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목표로 하여 운용하는 액티브 ETF로 비교지수대비 높은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이 투자신탁이 편입하는 투자대상 자산은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주식과 유사한 수준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은 역외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간혹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거래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원하는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4.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해당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전이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취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도로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일부 자산 매각을 통해 분배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분배금 지급으로 인해 투자원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최초기준가(상장시점의 기준지수)를 기준으로 이익금보다 큰 금액이 분배금으로 지급되었을 경우 이익금 초과분배로 판단합니다. 즉, 분배전 기준가가 펀드설정 당시 최초 기준가보다 낮은 경우(최초기준가 이상이었으나 분배로 인해 그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 또는 이미 최초기준가 미만임에도 분배한 경우) 이익금 초과분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1) 보유 중인 재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평가손실, 매매에 따른 매매손실이 발생되어 이익금이 없거나 분배할 금액보다 작은 경우 2) 일부 보유재산에서는 매매이익, 평가이익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전체에서 손실이 발생된 경우 등이라도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익초과분배여부는 펀드 전체 기준으로 판단되며 투자자별로 매입시점이 상이하므로 투자자의 실제 원금과 수익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별로 매입시점 기준가격이 분배 전 기준가격보다 높은 경우 이익금 초과분배로 볼 수 있으며 이익금 초과분배가 지속될 경우 투자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요약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6.06.12)

**삼성KODEX 적격TDF 2060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펀드 코드: EI447)**

| 투자 위험 등급 3등급(다소높은위험) |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주식, 채권, 그 외 자산 등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분산투자하되, **주식 및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고, 주기적으로 투자대상자산의 투자비중을 조절하는 투자신탁으로 주된 투자대상에 신탁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여 **재간접 투자위험, 자산배분전략에 따른 위험, 환율변동위험**, 비교지수의 변화를 일정수준 초과하도록 운용함에 따른 **액티브ETF투자위험 및 상관계수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삼성KODEX 적격TDF 2060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정보]

###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제5조의2에 따른 적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TDF(Target Date Fund)란?
- 타깃데이트펀드(TDF, Target Date Fund)란 투자자의 은퇴예상시기 등 투자목표시점이 다가올수록 위험자산의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생애주기형 자산배분 전략을 통하여 투자위험을 낮추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 은퇴시점에 따라 설계된 상품 라인업을 통해 65세를 은퇴기준으로 하여, 은퇴하는 해의 상품(적격TDF 2030/적격TDF 2040/적격TDF 2050/적격TDF 2060 ETF)을 선택 가능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액티브상장지수펀드로 S&P Global Indices에서 산출·발표하는 Samsung Korea Target Date 2060 Index(KRW기준)를 비교지수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목표로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신탁재산의 60%이상을 주식 및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 Samsung Korea Target Date 2060 Index(KRW기준): 2060년을 은퇴시점 Target Date로 하여 생애주기에 맞게 미리 정해진 투자플랜(Glide Path)에 따라 투자비중을 조정하는 자산배분형 지수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주식 등의 해외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 제거를 위한 환헷지전략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피투자펀드의 투자 필요성>
이 투자신탁에서 주로 편입하는 다양한 자산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들은 각각 주식, 채권, 그 외 자산 관련 지수를 추종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아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투자비중을 조절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추구하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투자펀드의 선정 기준>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 투자대상으로 선정한 자산군별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선별하고, 선별된 ETF 중에서 기초지수대비 성과, 트레킹 에러, 비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 ETF를 선정합니다. 또한 ETF의 운용 규모 및 거래량도 함께 고려하여 매매시 발생할 수 있는 간접 비용(호가차이 등)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투자대상 ETF를 선정합니다.
편입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운용보고서 및 다양한 추가 점검 방식을 통해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실사 실시여부 및 실사 방법>
이 투자신탁은 편입 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피투자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들은 국내외 거래소 기준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져 거래되고 있으며 해당 거래소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한 규제하에 운용 중이기 때문에 거래 유동성 및 운용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이 일반적으로 저비용 구조를 갖고 있어 중장기 투자 목적의 수익자를 위한 본 투자신탁의 전략에 필요한 투자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분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상장지수투자신탁

### 투자비용

| 명칭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 | | |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 천원) | | | | |
|---|---|---|---|---|---|---|---|---|---|---|
| | 판매수수료 | 총보수 | 판매보수 | 동종유형 총보수 | 총 보수·비용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삼성KODEX 적격TDF 2060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없음 | 0.3000% | 0.001% | | 0.4902% | 49 | 99 | 152 | 266 | 604 |

## 투자비용

(주1)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ㅇ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3)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 (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 + 피투자펀드보수)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되, 기타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이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펀드보수는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신탁(모투자신탁 포함)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하여 산출한 피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산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보수 및 기타비용을 알 수 없는 경우, 산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 명칭 | 최초설정일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일이후 |
|---|---|---|---|---|---|---|
| 삼성KODEX 적격TDF 2060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2025-07-18 | | | | | 22.84 |
| 비교지수(%) | 2025-07-18 | | | | | 20.89 |
| 수익률 변동성(%) | 2025-07-18 | | | | | 8.22 |

- 비교지수 : Samsung Korea Target Date 2060 Index(KRW) * 100%(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운용전문인력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재간접) | | | | 운용 경력년수 |
|---|---|---|---|---|---|---|---|---|---|
| | | | 집합투자기구 수 | 운용규모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
| 이정택 | 1988 | 책임(VP) | 9개 | 12,521억원 | 24.19% | 34.45% | 20.23% | 29.32% | 7년 0개월 |
| 황희영 | 1987 | 부책임(VP) | 12개 | 7,537억원 | 24.80% | 31.88% | 20.23% | 29.32% | 13년 9개월 |

-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황희영 1개 33억
-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able>
<tr><td rowspan="8">주요투자 위험</td><td>구분</td><td>투자위험의 주요내용</td></tr>
<tr><td>시장거래에 따른 순자산가치와의 괴리 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며 시장가격으로 유통시장을 통해 매매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시장 가격은 순자산가치(NAV) 및 유통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시장 가격은 이 투자신탁에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 NAV보다 높게 또는 낮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td></tr>
<tr><td>ETF 장중거래시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td><td>이 투자신탁의 기초자산은 해당 시장이 개장되지 않아 가치변화가 없음에도 원/달러변동에 노출되어 있는 기초자산의 성격상 원/달러 환율의 일중변동에 따라 추정NAV가 변동되고, 이 변동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ETF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TF의 거래시 장중 환변동에 유의하여야 합니다.</td></tr>
<tr><td>액티브 ETF 투자 위험</td><td>이 집합투자기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에 따른 액티브상장지수펀드로 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br>즉, 이 투자신탁은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 변동률과 비교지수의 일간 변동률이 유사하도록 추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상장지수펀드(이하 "ETF"라 한다)와 달리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방식을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목표로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ETF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담당매니저의 재량으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이며 비교지수의 성과와 다른 성과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td></tr>
<tr><td>추적오차 및 상관계수 위험</td><td>이 집합투자기구는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실현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ETF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추적오차 위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ETF(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ETF는 제외)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ETF 비교지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7 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ETF와 비교지수의 상관계수를 관리할 예정입니다.</td></tr>
<tr><td>자산배분전략에 따른 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글로벌주식, 국내채권 및 그 외 자산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 맞는 합리적인 특정 장기 목표수익률(Target Return) 설정 및 그에 부합하는 변동성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 경기 국면 및 자산별 기대 수익 및 위험 등에 따라 글로벌주식, 국내채권 및 그외 자산 등 다양한 자산의 투자비중을 조절하는 자산배분 전략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배분전략이 시장의 움직임에 비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또는 특정 자산의 손실이 확대되는 경우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일반투자신탁에 비해 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장기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산별 장기기대수익을 예측하고 과거 위험(변동성) 등을 고려한 이론적인 자산배분모델 등을 활용하여 투자 대상에 대한 투자 비율 등을 결정하여 투자하는 자산배분전략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목표로 추구하는 수익률은 자산별 기대 수익 등을 예측하여 이론적인 자산배분 모델을 통해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장기적인 기대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래의 확정 수익률이나 보장된 수익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투자기간 및 가입/환매 시점 등에 따라 투자자별 수익률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므로 투자 결정 시 투자자의 투자기간 및 투자목적을 반드시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재간접 투자에 따른 추가 비용</td><td>이 투자신탁은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으로서 집합투자규약에 명시된 보수 이외에 재간접 투자에 따른 피투자신탁 보수가 발생하며, 지수사용료, 매매비용 등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투자신탁 투자시 이에 대한 내용을 사전적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이익금 초과분배에 따른 위험</td><td>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취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도로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일부 자산 매각을 통해 분배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분배금 지급으로 인해 투자원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최초기준가(상장시점의 기준지수)를 기준으로 이익금보다 큰 금액이 분배금으로 지급되었을 경우 이익금 초과분배로 판단합니다. 즉, 분배전 기준가가 펀드설정 당시 최초 기준가보다 낮은 경우(최초기준가 이상이었으나 분배로 인해 그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 또는 이미 최초기준가 미만임에도 분배한 경우)이익금 초과분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1) 보유 중인 재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평가손실, 매매에 따른 매매손실이 발생되어 이익금이 없거나 분배할 금액보다 작은 경우 2) 일부 보유재산에서는 매매이익, 평가이익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전체에 서 손실이 발생된 경우 등이라도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익초과분배여부는펀드 전체 기준으로 판단되며 투자자별로 매입시점이 상이하므로 투자자의 실제 원금과 수익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별로 매입시점 기준가격이 분배 전 기준가격보다 높은 경우 이익금 초과분배로 볼 수 있으며 이익금 초과분배가 지속될 경우 투자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td></tr>
<tr><td colspan="3"></td></tr>
<tr><td>매입 방법</td><td colspan="2">개인투자자 : 장내 매수<br>법인투자자 : 장내 매수, 설정 청구</td><td rowspan="2">환매 방법</td><td rowspan="2">개인투자자 : 장내 매도<br>법인투자자 : 장내 매도, 환매 청구</td></tr>
<tr><td>환매 수수료</td><td colspan="2">없음</td></tr>
</table>

<table>
<tr><td>과세</td><td>
<table>
<tr><th>구분</th><th>과세의 주요내용</th></tr>
<tr><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u>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u>입니다.</td></tr>
<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br>※ 세제혜택계좌 등 투자자의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able>
</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1. 이연판매보수(CDSC) 적용기준 및 내용<br>- 해당사항없음<br><br>2. 전환형 구조<br>-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전화:1533-0300)</td></tr>
<tr><td>모집기간</td><td>2025년 7월 12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모집개시일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td><td>모집·매출 총액</td><td>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10조좌입니다.</td></tr>
<tr><td>효력발생일</td><td>2026. 6.24</td><td>존속기간</td><td>해당사항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fund.com)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td></tr>
<tr><td>참조</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td></tr>
</table>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www.samsungfund.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www.samsungfund.com)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명칭 | 펀드코드 |
|---|---|
| 삼성KODEX 적격TDF 2060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EI447 |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재간접형)

### 다. 개방형 · 폐쇄형 구분

- 개방형(중도환매가능)

### 라. 추가형 · 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납입가능)

### 마. 특수형태

- 상장지수투자신탁(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증권시장을 통하여 거래가능)

###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 해당없음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부의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모집 예정금액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10조좌입니다.

주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 |
|---|---|
| 모집기간 | 2025년 7월 12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모집개시일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
| 모집장소 | 지정참가회사, 판매회사 본·지점<br>※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samsungfund.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 증권시장을 통해 매입하거나, 법인투자자에 한해 지정참가회사를 통해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br>(설정 청구는 50,000좌 또는 그 정배수 단위로 가능)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주)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부의 "11.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가.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환금성 및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 이후 거래는 증권시장의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나. 상장요건

(1) 규모요건 : 상장신청일 현재 신탁 원본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 수익증권 수가 10만좌 이상일 것

(2) 유동성 요건 : 지정참가회사가 1사 이상이며, 지정참가회사 중 유동성공급자가 1사 이상일 것

(3) 자산구성방법

① 증권의 지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할 것. 다만, 목표로 하는 지수가 단순평균인 경우에는 모든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해야 한다.

·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100분의 95 이상

· 종목 수를 기준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100분의 50 이상

② 증권종목 이외의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는 종목을 100분의 95 이상 편입할 것

③ 위의 ①또는 ②에서 정한 방법으로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납입자산내역을 구성하기 곤란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제1항 제4호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① 또는 ②이외의 방법으로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납입자산내역을 구성하거나 금전납입을 할것. 이 경우 투자대상, 가격·지수에 연동하는 방법, 지수구성종목 이외의 자산 및 파생상품 자산구성 비중을 집합투자규약에 명시해야 한다.

-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내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
-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이하 "합성상장지수펀드"라 한다.)
- 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가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이하 "액티브상장지수펀드"라 한다.)
- 주권의 가격에 연동하기 위하여 주권 및 해당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등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이하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라 한다.)
-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 자산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다. 상장폐지 요건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거나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증권시장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상기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은 이 투자설명서 작성 기준일 현재까지 파악되는 것이며, 향후 증권시장의 필요에 따라 동 기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 기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집합투자업자는 이 기준의 변경에 따라 이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할 계획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파악하기를 원하는 투자자 또는 수익자는 증권시장 관련 홈페이지(www.krx.co.kr)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상장시장명칭 | 한국거래소 |
| 상장(예정)일 | 2025. 7.22 |
| 거래방법 | 증권시장을 통한 경쟁매매 |

**※ 수익증권의 상장이후 거래는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환금성이 크게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명칭 | 펀드코드 |
|---|---|
| 삼성KODEX 적격TDF 2060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EI447 |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변경시행일 | 변경 사항 |
|---|---|
| 2026. 3.17 | 운용역 변경(마승현 운용역 → 문현욱 운용역) |
| 2026. 4. 1 | 투자신탁명칭 및 투자한도 변경 (삼성KODEX TDF 2060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삼성KODEX 적격TDF 2060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운용역 변경(문현욱 운용역 → 이정택 운용역, 황희영 운용역) |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또는 신탁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2.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집합투자업자

| | |
|---|---|
| 회 사 명 |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자산운용(16~18층)<br>(대표전화 : 1533-0300) |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의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운용전문인력

###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재간접) | | | | 운용 경력년수 |
|---|---|---|---|---|---|---|---|---|---|
| | | | 집합투자기구 수 | 운용규모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
| 이정택 | 1988 | 책임(VP) | 9개 | 12,521억원 | 24.19% | 34.45% | 20.23% | 29.32% | 7년 0개월 |
| 황희영 | 1987 | 부책임(VP) | 12개 | 7,537억원 | 24.80% | 31.88% | 20.23% | 29.32% | 13년 9개월 |

| 성명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이정택 | 2016년 02월 ~ 2019년 03월 삼성자산운용 매크로팀<br>2019년 04월 ~ 2020년 01월 삼성자산운용 EMP운용팀<br>2020년 02월 ~ 現 삼성자산운용 AI퀀트운용팀 |
| 황희영 | 2012년 01월 ~ 2012년 11월 삼성자산운용 LT채권운용2팀<br>2012년 12월 ~ 2013년 01월 삼성자산운용 채권파생팀<br>2013년 02월 ~ 2013년 12월 삼성자산운용 글로벌운용팀<br>2014년 01월 ~ 2017년 12월 삼성자산운용 Asset Allocation팀<br>2018년 01월 ~ 2019년 03월 삼성자산운용 솔루션팀<br>2019년 04월 ~ 2020년 01월 삼성자산운용 EMP운용팀<br>2020년 02월 ~ 2021년 11월 삼성자산운용 퀀트운용팀<br>2021년 12월 ~ 現 삼성자산운용 AI퀀트운용팀 |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 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황희영 1개 33억

(주3)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4)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주5)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6)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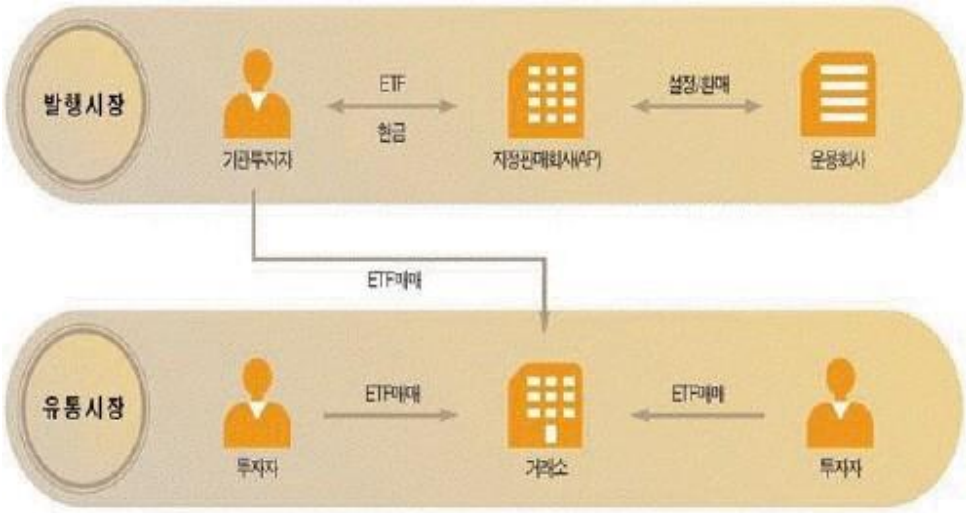
| 운용역 | 운용 기간 |
|---|---|
| 마승현 | 2025. 7.18 ~ 2026. 3.16 |
| 문현욱 | 2026. 3.17 ~ 2026. 3.31 |
| 황희영 | 2026. 4. 1 ~ 현재 |
| 이정택 | 2026. 4. 1 ~ 현재 |

주1) 2026. 6.24 기준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상장지수투자신탁




### 나. 종류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주) 자세한 사항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모자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 라. 전환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가. 이 투자신탁은 액티브상장지수펀드로 주식 및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신탁재산 60%이상 투자하며, S&P Global Indices에서 산출·발표하는 Samsung Korea Target Date 2060 Index(KRW기준)를 비교지수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목표로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금융투자업규정」 제5-23조의2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을 포함, 이하 '안전자산')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상으로 운용하다가, 투자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안전자산에의 투자를 점차 늘려 2060년(Target Date) 이후부터는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운용합니다. 또한, 투자기간 경과에 따라 주식, 그외 자산 등의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점차 줄이고 안전자산을 확대하는 자산배분전략을 시행합니다.

* TDF: 타깃데이트펀드(TDF, Target Date Fund)란 투자자의 은퇴예상시기 등 투자목표시점이 다가올수록 위험자산의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생애주기형 자산배분 전략을 통하여 투자위험을 낮추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이 비교지수가 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습

니다.

나. 피투자펀드의 투자 필요성

이 투자신탁에서 주로 편입하는 다양한 자산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이하, ETF)들은 각각 주식, 채권, 그 외 자산 관련 지수를 추종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아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투자비중을 조절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추구하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피투자펀드의 선정 기준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 투자대상으로 선정한 자산군별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선별하고, 선별된 ETF 중에서 기초지수대비 성과, 트레킹 에러, 비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 ETF를 선정합니다. 또한 ETF의 운용 규모 및 거래량도 함께 고려하여 매매시 발생할 수 있는 간접 비용(호가차이 등)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투자대상 ETF를 선정합니다. 편입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운용보고서 및 다양한 추가 점검 방식을 통해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라. 외국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실사여부 및 실사방법

이 투자신탁은 편입 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ETF들은 국내외 거래소 기준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져 거래되고 있으며 해당 거래소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한 규제하에 운용 중이기 때문에 거래 유동성 및 운용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ETF는 일반적으로 저비용 구조를 갖고 있어 중장기 투자 목적의 수익자를 위한 본 투자신탁의 전략에 필요한 투자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가. 투자대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 투자대상 | | 투자비율 | 투자대상 세부설명 |
|---|---|---|---|
| 1) | 집합투자증권 | 60% 이상 |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으로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또는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br>단, 주식 및 채권을 제외한 자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
| 2) | 주식 | 40% 이하 |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또는 법 제4조제8항에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증권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것) |
| 3) | 채권 | 40% 이하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A- 이상이 |

| | | | |
|---|---|---|---|
| | 채권 | | 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단,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채무증권을 포함, 이하 같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하고, 채무증권 투자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 |
| 4) | 장내파생상품 | 5)와 합산하여 위험평가액 10%이하 | 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을 포함)<br><br>*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가 되도록 함 |
| 5) | 장외파생상품 | 4)와 합산하여 위험평가액 10%이하 | 법 제5조제3항에 의한 장외파생상품(해외장외파생상품 포함)<br>*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가 되도록 함 |
| 6) | 환매조건부 매도 | 50% 이하 |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 총액의 50% 이내로 환매조건부 매도 가능 |
| 7) | 증권의 대여 | 50% 이하 |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의 50% 이내로 증권의 대여 가능 |
| 8) | 증권의 차입 | 20% 이하 | 1), 2), 3)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 |
| 9) |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 | 세부설명 내 투자한도 참고 | 금융투자업규정 제5-23조의2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을 포함)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2060년 1월 1일 이후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 |
| 10) | 해외 특정 국가에 대한 주식 및 채권 | 세부설명 내 투자한도 참고 | 해외 특정 국가에 대한 주식 및 채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주식 및 채권을 포함)에의 투자는 주식의 경우 투자신탁 주식투자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고, 채권의 경우 투자신탁 채권투자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
| 11) |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 - |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br>가.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br>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br>다.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br>라.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으로서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산을 운용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경우 그 신용평가등급은 A- 이상이어야 한다. |
| 12)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
|---|
|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2),3),4),5),9),10)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br>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간<br>②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br>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br>④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br>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2),3),4),5),9),10)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 ※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6),7),8)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br>①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br>②투자신탁의 일부해지<br>③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br>④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br>⑤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 ※ 위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함. |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자산별 투자금액(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적용)이 투자신탁 자산총액(파생상품의 경우 상품별로 달리 적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합니다.

주2)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3) 증권의 대여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가. (ETF의 경우) ETF 매매 편의성 증대 : ETF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들에게 보유증권을 대여할 수 있으며, 대차거래에 참여한 시장조성자들은 ETF 호가 수량 확대,호가 스프레드 축소 등을 통해 ETF 매매가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ETF를 매매
나.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다.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4) 증권의 차입 : 효율적 운용, 보유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나. 투자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구분 | 투자제한의 내용 | 예외 |
|---|---|---|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음<br>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br>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 |

| | | |
|---|---|---|
| 동일종목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다.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 동일종목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 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br>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br>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하 이 목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은행·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 동일법인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 동일회사 기초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 파생상품매매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 | | |
|---|---|---|
| | 행위 | |
| 동일 거래상대방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 같은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br>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br>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br>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br>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때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br>마.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 | | |
|---|---|---|
| |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br>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br>1) 집합투자재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투자방침과 투자전략이 상이한 복수의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 투자할 것<br>2)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투자전략을 활용할 것<br>3) 집합투자업자가 본인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 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출 것 | |
| 사모집합투자증권 |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 동일 집합투자증권 투자 제한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 동일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 |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단,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
| 장외파생상품매매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
|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시행령제80조제1항 제5호의4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br>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 | |

| | | |
|---|---|---|
| | 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br>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br>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포함한다)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
| 집합투자증권 보수 및 수수료등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
| 투자한도 초과 |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 다른집합투자증권에 투자 제외)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br>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br>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br>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br>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br>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에서 편입하는 투자대상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한 공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아래 정보를 통해 주된 투자대상, 전략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 https://www.kodex.com/main.do
한국투자신탁운용 http://www.kindexetf.com/
KB자산운용 http://www.kbstaretf.com/prod/finder
ARK https://ark-funds.com/our-etfs
First Trust https://www.ftportfolios.com/retail/etf/etflist.aspx
Invesco https://www.invesco.com/us/financial-products/etfs/performance?audienceType=Investor
ISHARES https://www.ishares.com/us/products/compare-funds
JPmorgan https://am.jpmorgan.com/us/en/asset-management/adv/products/fund-explorer/etf
Schwab https://www.schwab.com/etfs/invest-in-etfs
SPDR https://www.ssga.com/us/en/intermediary/etfs/fund-finder
Vanguard https://investor.vanguard.com/investment-products/list/etfs

Amplify https://amplifyetfs.com/our-etfs/

* 편입 가능한 ETF의 운용사 정보이며 이후 시장상황, 해외집합투자업자의 상황 또는 운용역의 판단 및 투자전략에 의해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 가. 투자 전략 및 위험 관리

(1)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제5조의2에 따른 적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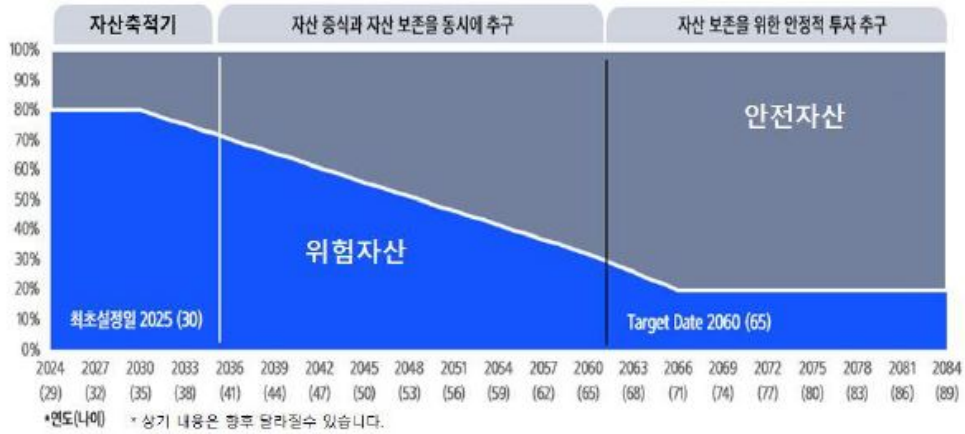
1) 이 투자신탁은 액티브상장지수펀드로 S&P Global Indices에서 산출·발표하는 Samsung Korea Target Date 2060 Index(KRW기준)를 비교지수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목표로 신탁재산의 60%이상을 주식 및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금융투자업규정」 제5-23조의2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을 포함, 이하 '안전자산')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상으로 운용하다가, 투자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안전자산에의 투자를 점차 늘려 2060년(Target Date) 이후부터는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운용합니다. 또한, 투자기간 경과에 따라 주식, 그외 자산 등의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점차 줄이고 안전자산을 확대하는 자산배분전략을 시행합니다.

2) 환율변동위험 제거를 위한 환헷지전략은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2) 비교지수 소개

- Samsung Korea Target Date 2060 Index(KRW): 2060년을 은퇴시점 Target Date로 하여 생애주기에 맞게 미리 정해진 투자플랜(Glide Path)에 따라 투자비중을 조정하는 자산배분형 지수

<table>
<tr><th>항 목</th><th colspan="3">내 용</th></tr>
<tr><td>지수명</td><td colspan="3">Samsung Korea Target Date 2060 Index(KRW)</td></tr>
<tr><td>종목구성</td><td colspan="3">· 인덱스 구성<br>- 글로벌 주식: S&P Global BMI 지수<br>- 한국 채권: S&P South Korea Sovereign Bond 지수<br>* S&P Global BMI (USD) 지수 (T-1) and USD/KRW 환율(T)<br>* S&P South Korea Sovereign Bond 지수 (T)</td></tr>
<tr><td>비중결정 및 변화<br>(Glide Path*)</td><td colspan="3">· Accumulation(축적기): 은퇴전 40년부터 은퇴전 30년까지의 기간<br>- 주식 비중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기간<br>- 해당 기간 동안 주식 80%, 채권 20%의 투자 비중을 고정<br>· Transition(전환기): 은퇴전 30년부터 은퇴 시점까지의 기간<br>- 주식 비중을 감소시키고 채권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구간<br>- 매년 1.6%의 주식 투자비중을 채권 투자로 전환<br>· Decumulation(분배기): 은퇴 이후 기간<br>- 은퇴 이후 주식의 투자비중을 더 빠르게 감소시키는 구간<br>- 매년 2.0%의 주식 투자비중을 채권 투자로 전환<br>- 최소 주식 비중은 20%로 유지<br>
</td></tr>
<tr><td>정기변경</td><td colspan="3">당해 연도 Glide Path의 위험자산/안전자산 비중에 맞춰 자산간의 투자비중 조절<br>(3/6/9/12월 첫번째 영업일)</td></tr>
<tr><td>수시변경<br>(Cap 적용)</td><td colspan="3">매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익월 첫 영업일 변경<br>· 주식비중 80% 초과할 경우 80%까지 Cap적용<br>· Target Date 이후 주식비중 40% 초과할 경우 40%까지 Cap적용</td></tr>
<tr><td>기준일</td><td>2014년 11월 28일 (1,000pt)</td><td>공식산출일</td><td>2025년 04월 30일</td></tr>
<tr><td>지수산출업자</td><td colspan="3">S&P Global Indices</td></tr>
</table>

* 상기 Glide Path는 특정 목표 시점(Target Date)에서의 특정 수익금액 혹은 특정 수익률을 상정하거나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산 배분 전략은 대내외 거시 경제 환경의 변화 등의 투자 환경 변화로 인해 본 자산 배분 전략이 최초에 기대하였던 예상 수익/위험 수준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수정될 수 있습니다.

**[Glide Path 구간별 위험자산 VS 안전자산 비중]**

| 연도 | 위험자산 비중 | 안전자산 비중 |
|---|---|---|
| 2025 | 80% | 20% |
| 2030 | 80% | 20% |
| 2035 | 72% | 28% |
| 2040 | 64% | 36% |
| 2045 | 56% | 44% |
| 2050 | 48% | 52% |
| 2055 | 40% | 60% |
| **Target Date 2060** | **32%** | **68%** |
| 2065 | 22% | 78% |
| 2070 | 20% | 80% |
| 2075 | 20% | 80% |
| 2080 | 20% | 80% |

※ 해당 ETF는 액티브 전략(배당전략, 메가트렌드 전략, 시장 상황에 따른 위험자산 비중 조절 전략 등)을 활용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 ETF입니다. 이에 따라 액티브 전략의 활용 후 실제 투자 비중은 목표 비중(기초지수 내 Glide Path 상의 비중)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세부 운용전략

비교지수 대비 안정적인 초과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1)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비교지수 추종을 위해 글로벌주식 및 국내채권 등 관련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할 예정이며 글로벌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또는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의 비중을 비교지수 내 Glide Path, 시장상황 등에 따라 조절하는 비율조정형 자산배분전략을 활용합니다.

2) 이 투자신탁은 특정목표시점(2060년)까지의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특정목표시점(2060년)까지 위험자산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안전자산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특정목표시점(2060년)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른 실제 자산배분은 대내외 거시 경제 환경의 변화, 시장상황 등으로 비교지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비교지수 대비 초과 성과를 위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배당전략 등을 활용한 추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특정목표시점(2060년)까지 잔여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메가트렌드 테마 및 그 외 전략 활용 가능하며, 2050년부터 2060년까지 특정목표시점에 가까워질수록, 2060년 이후에는 배당 전략 비중을 확대할 예정)

* 배당전략: 아래 배당 관련ETF유니버스 중 상위 AUM, 높은 배당 수익률, 낮은 보수 등 기준으로 편입 ETF 선정
- 배당성장
  · 배당성장주: 장기간 배당정책을 유지했고, 5년 이상 배당금을 연속적으로 인상해 온 기업
- 대체자산
  · 리츠(대체자산): 부동산 투자 펀드로서 임대수익을 수취하여 배당하는 펀드
  · 모기지 리츠(대체자산): 부동산 담보부 채권(Mortgage)을 운용하는 펀드
- 선진국 고배당 대형주
  · 미국 고배당주: 미국 대형 우량주 중 배당수익률이 높은 주식
  · 선진국 고배당주: 선진국 대형 우량주 중 배당수익률이 높은 주식

* 메가트렌드 테마 전략: 향후 장기 성장성이 예상되는 섹터와 테마를 선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ETF에 정량적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투자할 계획이며, 시장 트랜드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신규 테마 ETF 상장 시 유니버스 확장이 가능 (예: 반도체,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AI전력설비, 로봇, 방산, 화장품, 헬스케어,

우주, 원자력 등)

* 기타전략: 국가 배분 전략, 시장 변동성 증대 예상에 따른 위험자산 비중 조절 등

※ 위 기재된 유니버스는 일부만을 기재하였으며 참고용 예시로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피투자집합투자기구 관련 정보

아래 표는 이 투자신탁이 편입할 예정인 주요 집합투자기구 관련 정보 및 예상 편입비중 정보입니다.

아래 투자대상 종목은 시장상황, 해외 집합투자업자의 상황 또는 운용역의 판단 및 투자전략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교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과 유사한 전략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를 우선 순위로 변경 및 교체할 예정입니다.

| 분류 | 포트폴리오 구성 | ETF | 운용사 | 주요투자전략 | 투자대상 | 운용규모 (억, USD Mil) 2026.5.15 기준) | 비중(%) |
|---|---|---|---|---|---|---|---|
| 주식 등 |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 SPDR Portfolio MSCI Global Stock ETF | SPDR | 기초지수추종 | 글로벌 주식 | 1,602 | 27.90% |
| | | Vanguard Total World Stock ETF | Vanguard | 기초지수추종 | 글로벌 주식 | 73,278 | 27.90% |
| | | SPDR Portfolio S&P 500 ETF | SPDR | 기초지수추종 | 미국 S&P500 | 142,672 | 4.00% |
| | | Invesco Nasdaq 100 ETF | Invesco | 기초지수추종 | 미국 Nasdaq100 | 90,842 | 4.00% |
| | 액티브 포트폴리오 | KODEX 반도체 | 삼성자산운용 | 기초지수추종 | 한국 반도체 관련 주식 | 667 | 1.80% |
| | | KODEX 2차전지산업 | 삼성자산운용 | 기초지수추종 | 한국 2차전지 관련 주식 | 220 | 1.90% |
| | | KODEX 신재생에너지액티브 | 삼성자산운용 | 기초지수대비 초과성과 추구 | 한국 신재생 관련 주식 | 54 | 2.00% |
| | | KODEX AI 전력핵심설비 | 삼성자산운용 | 기초지수추종 | 한국 데이터센터 관련 주식 | 452 | 1.60% |
| | | KODEX 방산 TOP10 | 삼성자산운용 | 기초지수추종 | 한국 방산 관련 주식 | 54 | 2.10% |
| | | KODEX 미국반도체 | 삼성자산운용 | 기초지수추종 | 미국 반도체 관련 주식 | 127 | 2.50% |
| | | KODEX 미국 AI 전력핵심인프라 | 삼성자산운용 | 기초지수추종 | 미국 데이터센터 관련 주식 | 217 | 2.20% |
| | | KODEX 미국원자력 SMR | 삼성자산운용 | 기초지수추종 | 미국 원자력 관련 주식 | 9 | 2.10% |
| 채권 등 |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 KODEX 머니마켓액티브 | 삼성자산운용 | 기초지수대비 초과성과 추구 | 한국 머니마켓 | 748 | 5.00% |
| | | KODEX ESG 종합채권(A-이상)액티브 | 삼성자산운용 | 기초지수대비 초과성과 추구 | 한국 단기채권크레딧 | 34 | 5.00% |
| | | KODEX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 삼성자산운용 | 기초지수대비 초과성과 추구 | 한국 종합채권 | 421 | 10.00% |

(5) 위험관리 방안

1)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실현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ETF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추적오차 위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ETF(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ETF는 제외)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ETF비교지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7 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ETF와 비교지수의 상관계수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2) 해당 피투자집합투자기구들은 운용사 홈페이지, Factsheet 및 시장데이터제공업체(Bloomberg, Dataguide 등)를 통해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의 성과, 기초지수대비 성과, 보유 종목 및 기타 펀드 관련 현황을 쉽고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본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에 맞추어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의 현황을 모니터링합니다.

(6) 유동성 리스크 대응을 위한 비상조치계획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므로 일반 역외 집합투자기구를 편입하는 펀드에 비해 유동성 리스크가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투자신탁에서 새롭게 편입 예정인 종목의 경우 비교지수와의 추적오차와 함께 거래량을 살펴 편입하여 매각 시 유동성 제약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유동성 위험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7)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이 비교지수가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 투자전략의 변경 등으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 지수: Samsung Korea Target Date 2060 Index(KRW) * 100%

※ 비교지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S&P홈페이지 (https://www.spglobal.com/spdji/en/customindices/samsung-asset-management/samsung-korea-target-date-2060-index/#overview)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참고] 하위지수 소개

| 지수명 | S&P Global BMI Index | S&P Korea Sovereign Bond Index |
|---|---|---|
| 종목선정 | ·국가구성: S&P Developed & Emerging BMI<br>·구성종목: 심사대상 종목 중 아래의 종목을 편입<br>- 유동시가총액 > USD 100 Million 이상<br>- 유동시가총액 < USD 75 Million 이하의 경우 편출<br>·유동성조건: USD 12-month Median Value Traded ratio (MVTR) 기준 필터<br>- 12개월 Median Daily value traded amount / 마지막 월 종목의 유동시가총액<br>- 선진시장= 20% 이상, 신흥시장= 10% | ·유니버스 구성: 정부 발행 채권 대상<br>·통화 조건: Local Currency<br>·만기 조건: Rebalance Date 전 최소 한달 이상<br>·기타 조건:<br>- Coupon type: fixed, zero, step-up, fixed-to-float<br>·편입 제외: STRIPS, Inflation-linked bonds, floating-rate, puttable bonds, sukuk bonds |
| 가중방식 | 유동시가총액방식 | 시가총액가중방식 |
| 정기변경 | 매년 9월(3,6,12월 IPO종목 업데이트) | 매월 |
| 수시변경 | 상장폐지 등 수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
| 기준일 | 1994년 12월 29일 | 2006년 12월 29일 |
| 종목수 | 14,810개 | 134개 |
| 지수산출업자 | S&P Global Indices | S&P Global Indices |
| 비고 (25.5.31기준) | 국가별현황<br>미국(61.3%), 유럽(15.2%), 신흥국(12.6%), 일본(6.20%), 캐나다(2.9%) 등 | YTM: 2.59% Duration: 9.3 |

(9) 이익금 초과분배에 관한 사항

펀드는 분배금 지급기준일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있습니다.

①보유 중인 재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평가손실, 매매에 따른 매매 손실이 발생되어 이익금이 없거나 분배할 금액보다 작은 경우

②일부 보유재산에서는 매매이익, 평가이익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전체에서 손실이 발생된 경우 등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나. 수익구조

- 이 투자신탁은 액티브상장지수펀드로 S&P Global Indices에서 산출·발표하는 Samsung Korea Target Date 2060 Index(KRW기준)를 비교지수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목표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신탁재산의 60%이상을 주식 및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시장상황 및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구조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구조는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시장상황 변동이나 기타 사정에 의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수익구조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지정참가회사 및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가. 일반위험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 투자신탁재산을 국내외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해외 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신흥시장(이머징 마켓)의 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환율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은 해외투자로 인한 환율변동위험에 대해 환율변동위험 제거를 위한 환헷지 전략을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은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
| 파생상품<br>투자위험 |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집합투자증권 등 가격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의 운용구조, 투자성과, 보수, 거래비용 등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따른 위험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 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해외 증권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 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투자대상인 해외투자신탁의 운용전략에 대한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
| 원본손실 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음에 따라 투자상환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재산 가치변동에 따라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 과세 위험 |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r><br>* 과세대상자산의 예: 해외투자 시 이익 및 환차손익, 채권투자 시 이자수익 등<br>*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

**나. 특수위험**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국가위험 |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일부 투자국가 증권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
|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시장의 증권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 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 상장폐지위험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ETF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당해 ETF를 상장폐지해야 하므로 상장폐지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 |
|---|---|
| 개인수익자의 투자자금 회수 곤란 위험 | 개인수익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만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즉, 개인투자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거래가 부족하여 개인수익자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개인수익자가 보유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br>※ 법인수익자의 경우 보유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거나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설정단위 또는 그 정배수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 신청할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서 환매가 가능합니다. |
| 지수산출방식의 대폭 변경 또는 중단 위험 | 이 투자신탁이 추적하는 비교지수를 관리하는 지수관리회사의 사정으로 그 지수의 산출방식이 대폭 변경되어 집합투자업자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투자전략으로 더 이상 그 지수를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수관리회사의 사정 또는 기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지수의 발표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이 중단되고, 상장 폐지 및 이 투자신탁의 전부해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수익자는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시장거래에 따른 순자산가치와의 괴리 위험 |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며 시장가격으로 유통시장을 통해 매매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시장 가격은 순자산가치(NAV) 및 유통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시장가격은 이 투자신탁에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 NAV보다 높게 또는 낮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
| 한국과 다른 시간대에 거래되는 기초지수를 추적하는 ETF 거래가격과 순자산가치(NAV)와의 괴리 위험 | 한국거래소의 개장시간과 다른 시간대에 기초자산이 거래 될 때 한국시간대에 발생된 천재지변 혹은 경제지표 및 기타 정책변수 등의 변동 등 기초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하여 한국의 장 종료 후 해당 기초자산의 변동의 가능성이 높을 때 ETF의 본질적인 가치는 한국시장에 공시되고 있는 ETF의 추정NAV와 괴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ETF의 추정NAV와 ETF의 거래가격이 크게 차이가 난 상태로 거래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거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ETF 장중거래시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 | 이 투자신탁의 기초자산은 해당 시장이 개장되지 않아 가치변화가 없음에도 원/달러변동에 노출되어 있는 기초자산의 성격상 원/달러 환율의 일중변동에 따라 추정NAV가 변동되고, 이 변동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ETF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TF의 거래시 장중 환변동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액티브 ETF 투자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에 따른 액티브상장지수펀드로 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br>즉, 이 투자신탁은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 변동률과 비교지수의 일간 변동률이 유사하도록 추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상장지수펀드(이하"ETF"라 한다)와 달리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방식을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목표로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ETF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담당매니저의 재량으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이며 비교지수의 성과와 다른 성과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
| 추적오차 및 상관계수 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실현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ETF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추적오차 위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ETF(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ETF는 제외)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ETF 비교지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7 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ETF와 비교지수의 상관계수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

| | |
|---|---|
| 자산배분전략에 따른 위험 |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주식, 국내채권 및 그 외 자산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 맞는 합리적인 특정 장기 목표 수익률(Target Return) 설정 및 그에 부합하는 변동성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 경기 국면 및 자산별 기대 수익 및 위험 등에 따라 글로벌주식, 국내채권 및 그외 자산 등 다양한 자산의 투자비중을 조절하는 자산배분 전략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배분전략이 시장의 움직임에 비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또는 특정 자산의 손실이 확대되는 경우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일반투자신탁에 비해 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장기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산별 장기 기대수익을 예측하고 과거 위험(변동성) 등을 고려한 이론적인 자산배분모델 등을 활용하여 투자 대상에 대한 투자 비율 등을 결정하여 투자하는 자산배분전략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목표로 추구하는 수익률은 자산별 기대 수익 등을 예측하여 이론적인 자산배분 모델을 통해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장기적인 기대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래의 확정 수익률이나 보장된 수익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투자기간 및 가입/환매 시점 등에 따라 투자자별 수익률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므로 투자 결정 시 투자자의 투자기간 및 투자목적을 반드시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 재간접 투자에 따른 추가 비용 | 이 투자신탁은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으로서 집합투자규약에 명시된 보수 이외에 재간접 투자에 따른 피투자신탁 보수가 발생하며, 지수사용료, 매매비용 등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투자신탁 투자시 이에 대한 내용을 사전적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유동성 위험 | 이 투자신탁이 편입하는 투자대상 자산은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주식과 유사한 수준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은 역외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간혹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거래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원하는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외국펀드 설립지 국가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외국에 소재한 집합투자기구에도 투자하며, 이 경우 외국감독기관의 규제를 받습니다. 투자자들은 자국 금융감독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규제 보호 장치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 외국운용사 관련 위험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에 소재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성과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인력의 전문성 및 투자 관련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크게 좌우됩니다. 또한,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으로 인하여 피투자펀드가 손실을 입거나 달리 투자하였을 경우 갖게 될 이익 창출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투자 관련 업무에 개입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익금 초과분배에 따른 위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취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도로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일부 자산 매각을 통해 분배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분배금 지급으로 인해 투자원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최초기준가(상장시점의 기준지수)를 기준으로 이익금보다 큰 금액이 분배금으로 지급되었을 경우 이익금 초과분배로 판단합니다. 즉, 분배전 기준가가 펀드설정 당시 최초 기준가보다 낮은 경우(최초기준가 이상이었으나 분배로 인해 그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 또는 이미 최초기준가 미만임에도 분배한 경우)이익금 초과분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1) 보유 중인 재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평가손실, 매매에 따른 매매손실이 발생되어 이익금이 없거나 분배할 금액보다 작은 경우 2) 일부 보유재산에서는 매매이익, 평가이익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전체에 서 손실이 발생된 경우 등이라도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익초과분배여부는펀드 전체 기준으로 판단되며 투자자별로 매입시점이 상이하므로 투자자의 실제 원금과 수익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별로 매입시점 기준가격이 분배 전 기준가격 |

| | |
|---|---|
| 이익금 초과분배에 따른 위험 | 보다 높은 경우 이익금 초과분배로 볼 수 있으며 이익금 초과분배가 지속될 경우 투자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 다. 기타 투자위험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
| 유동성 위험 |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라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환매연기위험 |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 “제2부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오퍼레이션 위험 |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퍼레이션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
| 투자신탁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 |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
| 투자신탁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 또는 해산할 수 있습니다. |
| 투자신탁 소규모의 위험 | 투자신탁의 설정금액이 소액이거나, 환매 등에 의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분산투자 등 원활한 펀드 운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준가격 산정오류의 위험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법에서 정한 오차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 증권의 대여 또는 차입거래 위험 | 증권의 대여 또는 차입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액티브상장지수펀드로 S&P Global Indices에서 산출·발표하는 Samsung Korea Target Date 2060 Index(KRW기준)를 비교지수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목표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신탁재산의 60%이상을 주식 및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설정 후 3년이 경과시 [주7]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이하 '97.5% VaR')으로 등급분류 기준이 변경되면서 위험등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다소 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투자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동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위험등급구분]

1등급 : 매우높은위험

2등급 : 높은위험

**3등급 : 다소높은위험**

4등급 : 보통위험

5등급 : 낮은위험

6등급 : 매우낮은위험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

| 위험등급 | 분류기준 | 상세설명 |
|---|---|---|
| 1등급 | 매우높은위험 |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br>-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2등급 | 높은위험 | - 고위험자산에 8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3등급 | 다소높은위험 |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4등급 | 보통위험 |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5등급 | 낮은위험 |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6등급 | 매우낮은위험 |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br>-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주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입니다.**

**주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입니다.**

**주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지방채,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입니다.**

**주4)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합니다.**

**주5)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 등급은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주6) 설정 후 3년이 경과시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으로 등급분류 기준이 변경되면서 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7)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에 해당하는 손실률(신뢰구간 97.5%)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 250)를 곱해 산출하여 등급 기준표상의 상한치를 비교합니다.**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해당 운용펀드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

**주8) 상기 분류기준 이외에 투자전략,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외화표시집합투자기구, 레버리지/인버스,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및 환변동성 노출여부에 따라 위험등급을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9) 이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 가. 매입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 방법은 아래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증권시장에서 수익증권 매입

1)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를 원하는 개인 또는 법인 투자자는 증권시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 또는 시장가격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에 따른 자금지급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의 절차(매수일로부터 3영업일에 매수대금 지급 및 수익증권 수도)와 동일합니다

2) 1좌 단위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2) 지정참가회사또는 판매회사를 통한 수익증권 매입(투자신탁의 설정 청구)

1) 수익증권 매수 청구: 지정참가회사

2)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의 설정에 의하여 매입하기를 원하는 법인투자자는 설정단위(CU: Creation Unit) 또는 그 정배수에 해당하는 자금(납입금 등)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이 투자신탁으로 납입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신탁 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50,000좌입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50,000좌 또는 그 정배수(100,000좌, 150,000좌 등)로만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규모의 자금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의 경우 증권시장에서 수익증권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 설정단위(CU)란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ETF(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을 설정신청하거나 수익자가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신청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 납입금등이란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 설정을 위하여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 납부자산구성내역(Portfolio DepositFile)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 또는 해지를 위하여 금전으로 증권시장에 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기타 수익증권 매입 관련 사항

1) 집합투자업자가 설정단위 평가가액의 변동으로 투자신탁의 원활한 설정·해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설정단위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월 전까지 증권시장에 설정단위 수량의 변경에 관하여 공시하고 공고할 것입니다.

2) 수익증권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기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은 현금에 의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4) 설정절차

1) 이 투자신탁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 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입 받은 납입금등을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입함으로써 설정합니다.

※ 투자신탁 설정청구의 효력 등

- 투자신탁의 설정청구는 매 영업일 오후 4시까지로 합니다. 투자자가 이 시한을 경과하여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경우, 이 설정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설정은 투자자의 설정청구로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동 설정청구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승인을 하여야 설정청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위 1)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금등을 납입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증권시장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입금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3) 위 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4) 위 1) 내지 3)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입금등의 설정요청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5) 위 1)내지 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교체의 경우 :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러한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함

②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이익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이 경우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함

③ 위 ① 내지 ②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기간 및 공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6) 위 5)에서 규정된 구체적 사유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증권시장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신탁의 설정요청 접수를 중지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설정요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당해 설정요청을 취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 된 후의 최초 영업일에 당해 설정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그 최초 영업일에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기존에 설정요청을 접수한 납입금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이를 보정하여야합니다.

(5) 일자별 설정절차 요약

| | T-1 | T | T+1 | T+2 |
|---|---|---|---|---|
| 투자자 | | 지정참가회사에 설정청구 | | 설정자금 납입, 정산금액 존재시, 정산 및 수익증권 수령 |
| 지정참가회사 | | 집합투자업자에 설정요구 | | 인수도명세 확인 및 수익자 통보(집합투자업자는 증권시장에 상장신청), 신탁회사로 납부금등 이체 |
| 집합투자업자 | 납부자산구성내역 통보 (증권시장 등) | 설정내역 확인 및 승인 | | 수익증권 발행(전자등록기관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
| 전자등록기관 | | 설정내역 취합 및 통보 | | 확정된 설정 내역 취합 및 통보 |
| 신탁업자 | | | | 납부금 등의 납입확인 |

(6) 종류별 가입자격

- 해당사항 없음

(7)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해당사항 없음

(8) 매입 청구의 취소(정정)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오후 4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나. 환매

환매의 방법은 아래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증권시장에서 수익증권 매도하는 방법

1) 증권시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 내에서는 매도 가능. 이 경우 매도에 따른 결제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의 절차와 동일(**매도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매도대금 결제**)합니다.
2) 1좌 단위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2) 지정판매회사를 통한 수익증권 매도하는 방법(투자신탁의 환매 청구)

법인수익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설정단위(CU: Creation Unit) 또는 그 정배수로 보유 수익증권의 환매 청구가 가능합니다.(**환매 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환매**) 개인수익자의 경우는 투자신탁의 환매 청구에 의한 수익증권 환매는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환매절차

1)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업무정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효력 등

-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는 매 영업일 오후 4시까지로 합니다. 수익자가 이 시한을 경과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그 환매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합니다.

- 환매청구의 취소는 환매청구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합니다. 이 시한을 경과하여 환매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동 취소신청은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위 1)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는 1)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위 1) 및 2)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5) 위 2) 내지 4)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하는 경우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신탁업자에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위 2) 내지 5)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7) 위 2) 내지 6)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한다)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 그 투자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종가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합니다.

8) 위 7)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전이 부족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금전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환매자산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9) 위 7)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 해지에 의한 방법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10) 위 1) 내지 9)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환매불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7)의 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7)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 237조에 따라 환매를 연기하고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1) 위 10)의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자산은 당해 환매불가 사유가 해소되어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환매에 응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 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12) 위 1) 내지 1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지수 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함

②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이익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함

③ 위 ① 내지 ②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 및 공시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13) 위 12)의 구체적 사례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청구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증권시장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접수를 중지할 경우, 수익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환매청구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당해 환매청구접수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당해 환매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봅니다.

(4) 일자별 환매절차 요약

| | T-1 | T | T+2 | T+4 |
|---|---|---|---|---|
| 투자자 | | 지정참가회사에 환매 청구 | | 수익증권 제출 및 환매자산 수령 |
| 지정참가회사 | | 집합투자업자에 환매 요구 | 인수도명세 확인 및 수익자 통보 (집합투자업자는 증권시장에 변경상장신청) | 수익자계좌에서 수익증권 인출 및 자산 입고 |
| 집합투자업자 | 납부자산구성내역 통보 (증권시장 등) | 환매내역 확인 | | 투자신탁 일부해지 |
| 전자등록기관 | | 환매내역 취합 및 통보 | | 실행된 환매내역 취합 및 통보 |
| 신탁업자 | | | | 지정참가회사로 자산이체 및 이체 확인 |

(5)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6)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오후 4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7) 환매 가능 여부 및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중도환매를 허용하는 투자신탁입니다

| 수익증권의 중도환매 및 수수료 부과에 따른 3단계 구분 | | |
|---|---|---|
| 중도환매 불가 |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 중도환매 가능 |
| X | X | O |

**다. 실물 입·출고 등**

(1)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가 설정 또는 환매에 따라 자산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및 비치하는 예탁자 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에 의한 방법으로 당해 자산을 이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물 입·출고에 의한 설정·해지는 불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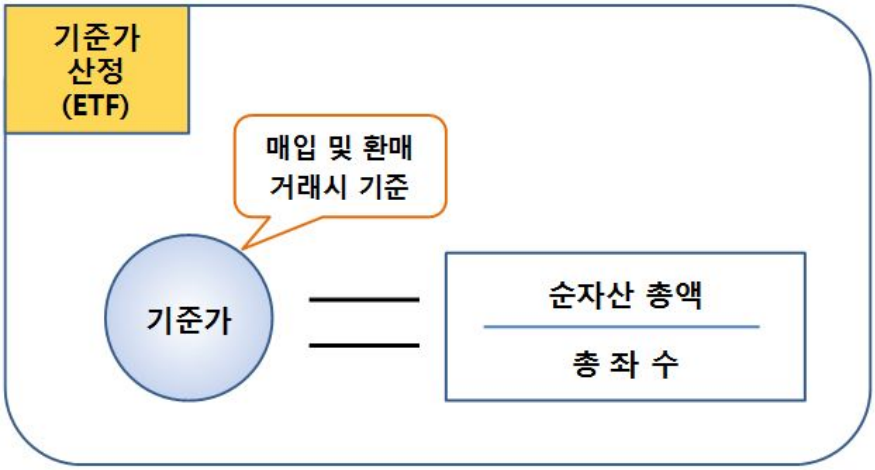
(2) 지정참가회사의 설정 또는 환매의 요구, 집합투자업자의 설정 또는 환매에 대한 승인, 기타 설정 또는 환매 관련 사항의 통지, 확인 등의 업무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예탁결제원시스템에 의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에 투자신탁 설정 또는 환매의 요구, 승인, 통지 및 확인 등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당해 요구, 승인, 통지, 확인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구분 | 내용 |
|---|---|
|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산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 순자산총액 "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 좌수로 나누어 1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1좌당 가격으로 공고합니다. |
| 종류간 기준이 상이한 이유 | 해당사항 없음 |
| 산정주기 |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
| 공시시기 |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
| 공시방법 |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
| 공시장소 |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fund.com)·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증권시장 인터넷홈페이지 |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산정방법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사는 매 영업일마다 기준가격을 산정합니다. 기준가격은 순자산을 참조하여 산정됩니다. 순자산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항목 모두를 합한 금액에 부채 및 약정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기준가격은 순자산을 기발행한 주식수로 나누어 통상적으로 소수 둘째 자리까지 산정되며 예외적인 경우 소수 넷째 자리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산의 미수수입뿐만 아니라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하위 클래스에 귀속되는 비용, 경비 및 수수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준비금이 설정될 것입니다. 특정 일자에 대한 기준가격이 산정된 이후에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사 이사회가 여하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가격에 대한 중대한 변동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이사회는 새로운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해당 일자에 처리되도록 예정된 모든 주문(이미 처리된 주문 포함)에 대하여 새로운 기준가격이 사용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br>* 상기 내용은 국내에 등록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최근 정정신고일 기준)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dsab005/main.do) 를 통해 전체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br><br>*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또는 상장되어 거래되는 부동산 및 인프라 관련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운용사가 매 영업일 기준가격을 산정하지만, 주식과 같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용사가 산정하는 기준가격이 아닌, 해당 시장에서의 거래가격(종가)이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 및 기준가격 산정에 반영됩니다. 각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정보는 종목별 거래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br>주요 거래소 및 거래소의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뉴욕증권거래소(The New York Stock Exchange) : www.nyse.com<br>- 나스닥(NASDAQ) : www.nasdaq.com<br>- 한국거래소 : www.krx.com<br><br>*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도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과 충실의무, 평가의 일관성 유지 등을 준수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공정가액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자산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산정한 공정가격이 시장가격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br>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매일 기준가격을 산출하지 않고 일정기간(주간, 월간 등) 동한 1번씩 기준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대상자산 | 평가방법 |
|---|---|
| 상장채권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비상장채권 |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상장주식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외화표시상장주식 | 평가기준일 전날의 최종시가로 평가 |
| 외화표시비상장주식 |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상장수익증권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장내파생상품 |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날에 공표되는 가격)으로 평가 |
| 장외파생상품 |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및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외국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의 컷오프 시간(18시)이내에 발행회사, 가격산정전문회사 또는 증권정보중개기관(불룸버그, 로이터 등) 등이 공고하거나 제공한 최근일의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시장의 평가기준일 전날 최종시가로 평가 |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1)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 담당임원 및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2) 업무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함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보수 및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지정참가회사 또는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환매수수료, 판매수수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이 투자신탁의 관련보수 등

1) 최초설정일 ~ 2040.12.31

| 클래스종류 | 지급비율(연간,%) | | | | | | | | | |
|---|---|---|---|---|---|---|---|---|---|---|
| | 집합투자업자 보수 | 지정참가회사보수 | 신탁업자 보수 |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 총 보수 | 기타 비용 | 총 보수·비용 | 동종유형 총 보수 | 총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 증권 거래비용 |
| 삼성KODEX 적격TDF 2060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0.279 | 0.001 | 0.01 | 0.01 | 0.30 | 0.0682 | 0.3682 | - | 0.4902 | 0.1966 |
| 지급시기 | 매3개월 후급(보수계산기간 말일의 익영업일로부터 제7영업일이내 지급). 단, 최초보수계산기간은 최초설정일로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로 하며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직전 보수계산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신탁계약 해지일까지로 함 | | | | | 사유 발생시 | - | - | - | 사유 발생시 |

2) 2041.01.01 ~ 2050.12.31

| 클래스종류 | 지급비율(연간,%) | | | | | | | | | |
|---|---|---|---|---|---|---|---|---|---|---|
| | 집합투자업자 보수 | 지정참가회사보수 | 신탁업자 보수 |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 총 보수 | 기타 비용 | 총 보수·비용 | 동종유형 총 보수 | 총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 증권 거래비용 |
| 삼성KODEX 적격TDF 2060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0.229 | 0.001 | 0.01 | 0.01 | 0.25 | 실비 | 0.25 | - | 0.372 | 실비 |
| 지급시기 | 매3개월 후급(보수계산기간 말일의 익영업일로부터 제7영업일이내 지급). 단, 최초보수계산기간은 최초설정일로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로 하며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직전 보수계산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신탁계약 해지일까지로 함 | | | | | 사유 발생시 | - | - | - | 사유 발생시 |

3) 2051.01.01 ~ 투자신탁해지일

| 클래스종류 | 지급비율(연간,%) | | | | | | | | | |
|---|---|---|---|---|---|---|---|---|---|---|
| | 집합투자업자 보수 | 지정참가회사보수 | 신탁업자 보수 |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 총 보수 | 기타 비용 | 총 보수·비용 | 동종유형 총 보수 | 총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 증권 거래비용 |
| 삼성KODEX 적격TDF 2060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0.179 | 0.001 | 0.01 | 0.01 | 0.20 | 실비 | 0.20 | - | 0.322 | 실비 |
| 지급시기 | 매3개월 후급(보수계산기간 말일의 익영업일로부터 제7영업일이내 지급). 단, 최초보수계산기간은 최초설정일로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로 하며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직전 보수계산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신탁계약 해지일까지로 함 | | | | | 사유 발생시 | - | - | - | 사유 발생시 |

주1) 총보수·비용비율은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주2)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으로서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 예탁 및 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지수사용료, 보관대리인 보수, 법률자문비용, 부동산감정평가보수 등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클래스 포함)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3) 증권거래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 (국내자산) 상장 또는 등록주식 매매수수료,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 ELW/ELS 거래수수료, 현금 중개수수료, 대차 또는 대주, Repo 거래 중개수수료 등
- (해외자산) 주식, 채권, 선물, 장외파생, 기타 Forward 매매수수료 등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수치화된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증권거래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직전 회계기간 발생 내역, 천원) |
|---|---|
| 증권거래비용 | 36,080 |

주4) 금융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금융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산이 가능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신탁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금액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직전 회계기간 발생 내역, 천원) |
|---|---|
| 금융비용 | - |

※ 회계기간 중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회계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직전 회계연도의 발생 비용을 기재할 예정입니다.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 비용을 의미합니다.

주6)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투자신탁(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으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비율이나 보수 등은 초기 포트폴리오 구성 과정에서 계산된 예상수치입니다. 다만,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기타비용 등을 알 수 없을 경우 또는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단위: 원)

| 명칭 | 투자기간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 삼성KODEX 적격TDF 2060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 49,020 | 99,358 | 152,212 | 265,982 | 604,072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36,820 | 74,630 | 114,330 | 199,785 | 453,732 |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 (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 + 피투자펀드보수)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되, 기타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이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펀드보수는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신탁(모투자신탁 포함)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하여 산출한 피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산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보수 및 기타비용을 알 수 없는 경우, 산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신탁 관련 비용

1)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송인 경우 제외)
7) 증권 및 파생상품 등 자산의 가격정보 비용
8) 증권 및 파생상품 등 자산의 투자정보 비용
9)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수 사용료 등의 지식재산권 비용
10) 상장수수료 및 연 부과금 등 수익증권의 상장 관련 비용
11)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12) 추정 NAV 산출 등 한국거래소를 통한 투자신탁 관련 정보산출 비용
13)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당 결제비용(transaction fee)
2. 보관비용(safe-keeping fee)
3. 기타 부수비용(out-of-pocket expenses: physical registration, DR conversion, tax reclaim, income collection 등)

## 다. 보수 및 지급내역에 관한 사항

다음 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 제1항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수취하는 투자신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기준지표 | 보수 산정방식 | 한도 (%) | 산출 주기 | 지급시기 | 지급내역 (직전 회계연도 기준, %) | | | |
|---|---|---|---|---|---|---|---|---|
|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 - | - | - | - | - | - | - | - |

## 14. 투자신탁분배금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분배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다만,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제4호의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으로서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분은 제외한다.)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4)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2)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합니다.

## 나. 투자신탁분배금

(1) 집합투자업자는 가.이익분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지급기준일 : 1월, 4월, 7월, 10월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 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2)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

3) 대상 수익자: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중인 수익자

4) 분배금 : 지급기준일 대상 수익자의 보유 좌수에 근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5) 지급처 : 수익자의 위탁매매계좌(지급기준일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가 개설되어 있는 판매회사, 지정판매회사 또는 증권회사에서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인도합니다.

(3) 위 (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이익금 초과분배에 관한 사항
펀드는 분배금 지급기준일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있습니다.
①보유 중인 재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평가손실, 매매에 따른 매매 손실이 발생되어 이익금이 없거나 분배할 금액보다 작은 경우
②일부 보유재산에서는 매매이익, 평가이익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전체에서 손실이 발생된 경우 등

**다. 과세**

**-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1)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2)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투자신탁 단계에서 별도의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3)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1)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이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 시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2010년 7월 1일(이하, '시행일')부터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며, 보유기간 과세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TF)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그 외 ETF(배당수익을 포함하는 Total Return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주식형 ETF 포함)는 보유기간과세 ETF로 분류되므로 과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아래의 기준은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기재된 것이며 투자자별 보다 자세한 ETF의 과세표준 및 매매내역관리, 원천징수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거래 증권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AP)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현금분배시 : ETF 결산시점에 분배금액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증분을 한도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분배금액은 분배부 과표기준가격에서 분배락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과 현금분배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 과표증분은 분배 과표기준가격에서 매수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② 매도시 : ETF 매도, 환매, 해지 및 해산 시점(이하, '매도시점')에는 보유기간동안의 과표증분과 매매차익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과세표준액이 계산되며 과세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과표증분과 매매차익 계산시 각각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과표증분은 매도시점의 과표기준가격에서 매수시점의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과세유보금액은 분배금액에서 결산시점의 과표증분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계산됩니다.
- 증권시장을 통하여 하나의 계좌내에서 동일한 ETF를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수량 가중 평균 가격을 산출하여 매수 과표기준가격으로 산정합니다.

③ 매수 과표기준가격 적용 기준 : 보유기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시행일 전에 매수하여 시행일 이후 매도하는 경우 시행일의 과표기준가를 매수 과표기준가로 적용합니다. 다만, 매수시 과표기준가가 시행일의 과표기준가보다 높은 경우 매수시 과표기준가를 적용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 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아래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회계법인 : 대주회계법인

###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 재무상태표 | | | |
|---|---|---|---|
| 항 목 | 제 1기 | | |
| | (2025.12.31) | | |
| 운용자산 | 74,675,097,617 | | |
| 증권 | 72,515,347,998 | | |
| 파생상품 | 0 | | |
| 부동산/실물자산 | 0 | | |
| 현금 및 예치금 | 2,159,749,619 | | |
| 기타 운용자산 | 0 | | |
| 기타자산 | 2,936,464 | | |
| 자산총계 | 74,678,034,081 | | |
| 운용부채 | 0 | | |
| 기타부채 | 1,656,818,380 | | |
| 부채총계 | 1,656,818,380 | | |
| 원본 | 66,500,000,000 | | |
| 수익조정금 | 3,567,002,908 | | |
| 이익잉여금 | 2,954,212,793 | | |
| 자본총계 | 73,021,215,701 | | |

[단위 : 원, %]

| 손익계산서 | | | |
|---|---|---|---|
| 항 목 | 제 1기 | | |
| | (2025.01.01 ~ 2025.12.31) | | |
| 운용수익 | 3,021,797,022 | | |
| 이자수익 | 14,293,318 | | |
| 배당수익 | 539,709,188 | | |
| 매매/평가차익(손) | 2,467,794,516 | | |
| 기타수익 | 0 | | |
| 운용비용 | 67,584,229 | | |
| 관련회사 보수 | 53,224,793 | | |
| 매매수수료 | 0 | | |
| 기타비용 | 14,359,436 | | |
| 당기순이익 | 2,954,212,793 | | |
| 매매회전율 | 0 | | |

주1)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예시로 1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 입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 백만원, 주, %)

| 주식 매수 | | 주식 매도 | |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 (B) | 매매회전율 (A/B) |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A) | | | |
| 0 | 0 | 0 | 0 | 0 | 0.00 | 13.29 |

* 동종유형이란 상장지수집합기구 및 일반 공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자본시장법 제229조에 따른 5가지 종류의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제외)을 의미하며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의 전체의 평균 매매회전율을 의미합니다.

* 해당 투자신탁이 자투자신탁인 경우에는 투자대상인 모투자신탁의 매매회전율에 대한 내용이며, 자투자신탁에서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비율을 안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주2) 증권의 대여/차입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 1기<br>(2025. 7.18~2025.12.31) |
|---|---|
|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는 수수료 수익 등 포함 | 0 |
|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는 수수료 비용 등 포함 | 0 |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당기<br>(2025. 7.18~2025.12.31) | | |
|---|---|---|---|
| | 거래금액(A) | 거래비용 | |
| | | 금액(B) | 거래비용 비율<br>(B/A) |
| 주식 | 0 | 0 | 0.00 |
|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 등) | 63,239 | 36 | 0.06 |
| 부동산 | | | 0.00 |
| 장내파생상품 | 0 | 0 | 0.00 |
| 장외파생상품 | | | 0.00 |
| 기타 | 0 | 0 | 0.00 |
| 합계 | 63,239 | 36 | 0.06 |

* 주식 중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 장외파생상품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수익적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작성 생략 가능합니다.

* 해당 투자신탁이 자투자신탁인 경우에는 투자대상인 모투자신탁의 거래비용에 대한 내용이며, 자투자신탁에서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비율을 안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나. 재무상태표

### 재 무 상 태 표

[단위:원]

| 과 목 | 제1기(2025.12.31) | | | | | |
|---|---|---|---|---|---|---|
| | 금 액 | | 금 액 | | 금 액 | |
| 자 산 | | | | | | |
| 운 용 자 산 | | | | | | |
| 현금및예치금 | | 2,159,749,619 | | | |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2,159,749,619 | | | | | |
| 2. 예치금 | 0 | | | | | |
| 3. 증거금 | 0 | | | | | |
| 대출채권 | | 0 | | | | |
| 1. 콜론 | 0 | | | | | |
|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0 | | | | | |
| 3. 매입어음 | 0 | | | | | |
| 4. 대출금 | 0 | | | | | |
| 유가증권 | | 72,515,347,998 | | | | |
| 1. 지분증권 | 0 | | | | | |
| 2. 채무증권 | 0 | | | | | |
| 3. 수익증권 | 72,515,347,998 | | | | | |
| 4. 기타유가증권 | 0 | | | | | |
| 파생상품 | | 0 | | | | |
| 1. 파생상품 | 0 | | | | | |
| 부동산과 실물자산 | | 0 | | | | |
| 1. 건물 | 0 | | | | | |
| 2. 토지 | 0 | | | | | |
| 3. 농산물 | 0 | | | | | |
| 4. 축산물 | 0 | | | | | |
| 기타운용자산 | | 0 | | | | |
| 1. 임차권 | 0 | | | | | |
| 2. 전세권 | 0 | | | | | |
| 기 타 자 산 | | 2,936,464 | | | | |
|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 0 | | | | | |
| 2. 정산미수금 | 0 | | | | | |
| 3. 미수이자 | 2,936,464 | | | | | |
| 4. 미수배당금 | 0 | | | | | |
| 5. 기타미수입금 | 0 | | | | | |
| 6. 기타자산 | 0 | | | | | |
| 7.수익증권청약금 | 0 | | | | | |
| 자 산 총 계 | | 74,678,034,081 | | | | |
| 부 채 | | | | | | |
| 운 용 부 채 | | 0 | | | | |
| 1. 옵션매도 | 0 | | | | | |
|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0 | | | | | |
| 기 타 부 채 | | 1,656,818,380 | | | | |
|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 1,605,666,774 | | | | | |
| 2. 정산미지급금 | 0 | | | | | |
| 3. 해지미지급금 | 0 | | | | | |
| 4. 수수료미지급금 | 50,433,473 | | | | | |
| 5. 기타미지급금 | 20,869 | | | | | |
| 6. 기타부채 | 697,264 | | | | | |
| 부 채 총 계 | | 1,656,818,380 | | | | |
| 자 본 | | | | | | |
| 1. 원 본 | 66,500,000,000 | | | | | |
|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 0 | | | | | |
| 3. 이월잉여금 | 6,521,215,701 | | | | | |
| (발행좌수 당기: 6,650,000 좌 | 이익잉여금 | 2,954,212,793 | 이익잉여금 | | 이익잉여금 | |
| 전기: 좌 | 수익조정금 | 3,567,002,908 | 수익조정금 | | 수익조정금 | |
| 전전기: 좌) | | | | | | |
| (기준가격 당기: 10,981 원 | | | | | | |
| 전기: 원 | | | | | | |
| 전전기: 원) | | | | | | |
| 자 본 총 계 | | 73,021,215,701 | | | |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 74,678,034,081 | | | | |

## 다. 손익계산서

# 손 익 계 산 서

[단위:원]

| 과 목 | 제 1기 (2025.01.01 ~ 2025.12.31) | | | | | |
|---|---|---|---|---|---|---|
| | 금 액 | | 금 액 | | 금 액 | |
| **운 용 수 익** | | | | | | |
| **1. 투자수익** | | 554,002,506 | | | | |
| 1. 이 자 수 익 | 14,293,318 | | | | | |
| 2. 배당금수익 | 539,709,188 | | | | | |
| 3. 수수료수익 | 0 | | | | | |
| 4. 임대료수익 | 0 | | | | | |
|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 | 3,050,903,798 | | | | |
| 1. 지분증권매매차익 | 0 | | | | | |
|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 0 | | | | | |
|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 0 | | | | | |
| 4. 지분증권평가차익 | 0 | | | | | |
| 5. 외환거래/평가차익 | 409,565,137 | | | | | |
|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 0 | | | | | |
| 7. 기타거래차익 | 2,641,338,661 | | | | | |
|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 | 583,109,282 | | | | |
| 1. 지분증권매매차손 | 0 | | | | | |
|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 0 | | | | | |
|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 0 | | | | | |
| 4. 지분증권평가차손 | 0 | | | | | |
| 5. 외환거래/평가차손 | 35,983,264 | | | | | |
| 6. 대손상각비 | 0 | | | | | |
|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 0 | | | | | |
| 8. 기타거래손실 | 547,126,018 | | | | | |
| **운 용 비 용** | | 67,584,229 | | | | |
| 1. 운용수수료 | 51,206,092 | | | | | |
| 2. 판매수수료 | 183,444 | | | | | |
| 3. 수탁수수료 | 1,835,257 | | | | | |
| 4. 투자자문수수료 | 0 | | | | | |
| 5. 임대자산관련비용 | 0 | | | | | |
| 6. 기타비용 | 14,359,436 | | | | | |
|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 | 2,954,212,793 | | | | |
|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 | 444 | | | | |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 억좌, 억원)

| 명칭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삼성KODEX 적격TDF 2060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2025.7.18 ~2025.12.31 | 0 | 200 | 0 | 1,395 | 0 | 0 | 0 | 665 |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가. 연평균수익률

| 연도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일이후 (25.07.22 ~26.06.12) |
|---|---|---|---|---|---|
| 투자신탁 | | | | | 22.90 % |
| 비교지수 | | | | | 20.89 % |
| 수익률변동성 | | | | | 8.22 % |

- 비교지수 : Samsung Korea Target Date 2060 Index(KRW) * 10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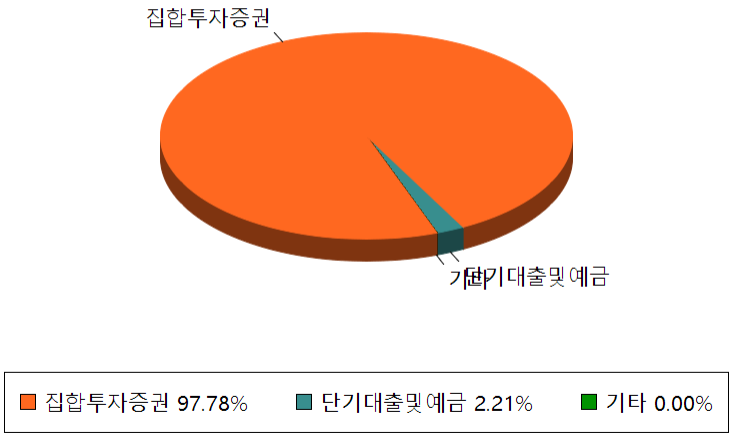
## 나. 연도별 수익률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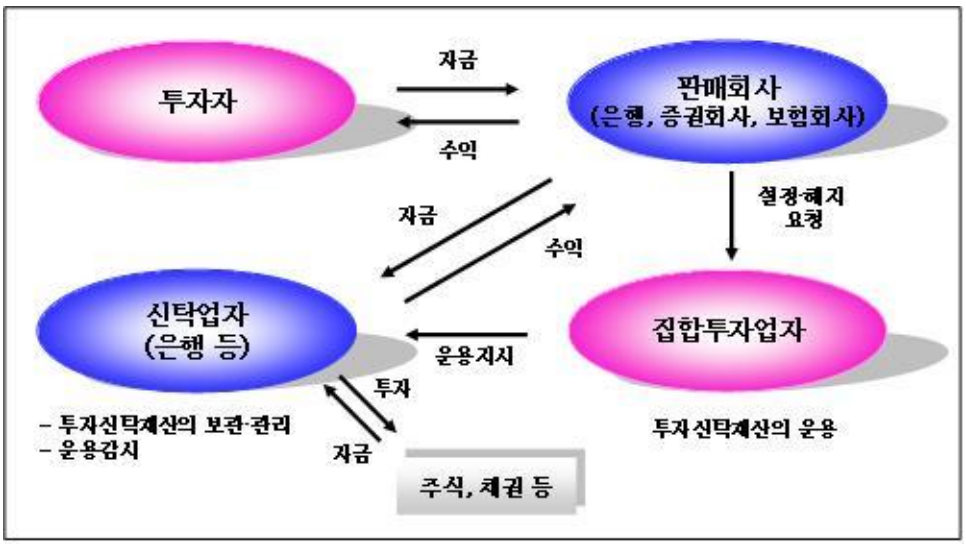
##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26.03.31 기준, 억원)

| 통화 | 증권 | | | | | 파생상품 | | 부동산 | 특별자산 | | 단기 대출 및 예금 | 기타 | 자산 총액 |
|---|---|---|---|---|---|---|---|---|---|---|---|---|---|
|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 투자 증권 | 파생 결합 증권 | 장내 | 장외 | | 실물 자산 | 기타 | | | |
| KRW | 0 | 0 | 0 | 566 | 0 | 0 | 0 | 0 | 0 | 0 | 25 | 0 | 590 |
| USD | 0 | 0 | 0 | 562 | 0 | 0 | 0 | 0 | 0 | 0 | 1 | 0 | 563 |
| 합계 | 0 | 0 | 0 | 1,128 | 0 | 0 | 0 | 0 | 0 | 0 | 26 | 0 | 1,153 |



#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개요

| | |
|---|---|
| 회사명 |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자산운용(16~18층)<br>(연락처 : 1533-0300, http://www.samsungfund.com) |
| 회사 연혁 | 1998.09.15 설립등기<br>1999.12.29 구.삼성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흡수합병<br>2000.03.03 자본금 300억 유상증자<br>2000.03.30 회사상호 변경(삼성생명투자신탁운용(주) -> 삼성투자신탁운용(주))<br>2001.11.05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br>2002.10.14 국내 최초 상장지수펀드(ETF) KODEX200 상장<br>2007.11.01 해외법인 Samsung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Ltd. 설립<br>2010.02.22 국내 최초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KODEX레버리지 상장<br>2010.04.01 회사상호변경 (삼성투자신탁운용(주) -> 삼성자산운용(주))<br>2011.08.26 사옥 이전(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중구 태평로)<br>2011.12.16 한국형 헤지펀드 삼성H클럽 Equity Hedge 1호 출시<br>2014.07.21 최대주주 변경 : 삼성증권 -> 삼성생명<br>2015.02.01 삼성생명 뉴욕현지법인 인수 Samsung Asset Management(New York)<br>2015.03.31 노동부 산재보험기금 전담운용기관(OCIO) 선정<br>2015.11.30 삼성생명 런던현지법인 인수 Samsung Asset Management(London)<br>2015.12.01 관리자산 200兆 달성 |

| | |
|---|---|
| 회사 연혁 | 2016.04.21 한국형 Target Date Fund 출시 (美 Capital社 제휴)<br>2016.04.29 홍콩 증시 최초 원유선물 ETF 상장<br>2016.08.11 중국 북경 자문사 설립(Samsung Asset Management (Beijing) Limited)<br>2016.08.29 사옥 이전 (서울시 중구 -> 서초구 서초대로 삼성전자 서초사옥)<br>2017.01.02 물적분할을 통한 삼성액티브자산운용(주) 삼성헤지자산운용(주) 설립<br>2017.05.30 한국형 Retirement Income Fund 출시 (美 Capital社 제휴)<br>2017.07.31 업계 최초 FA, FB 전용 판매지원플랫폼 오픈<br>2017.09.08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 재선정<br>2019.03.27 산재보험기금 전담운용기관(OCIO) 재선정<br>2019.12.02 B2C 직판 시스템 'r2' 서비스 오픈<br>2021.12.14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 재선정 |
| 자본금 | 934.3억 |
| 주요주주현황 | 삼성생명보험(주)( 100% ) |
| 사업목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업(모든 종류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무, 투자일임업무,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부동산임대업무, 신탁업, 부동산개발업무, 투자중개·매매업(집합투자증권의 중개·매매에 한함), 집합투자기구 또는 증권과 관련된 자료의 출판 및 판매에 관한 업무, 집합투자기구 또는 증권과 관련된 재산권, 상표권 等 권리 행사에 관한 업무, 집합투자기구 또는 증권과 관련된 전산용역 제공 또는 소프트웨어 대여·판매 업무, 자본시장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사업, 인사, 재무, 마케팅, 위험관리, 내부통제, 일반사무관리 등의 용역 제공, 기타 위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br>*위 사업 외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주) 산정 기준일은 2024.1.1일 입니다.

##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선관 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재 무 상 태 표

제28(당)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27(전)기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당기말 | | 전기말 | |
|---|---|---|---|---|---|
| 자 산 | | | | | |
| I. 현금및현금성자산 | 5 | 11,310,348,223 | | 8,561,059,445 | |
| I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6,20,33 | 424,902,893,065 | | 198,092,729,509 | |
| III.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7,33 | 720,892,387 | | 699,595,261 | |
| IV.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4,8 | 158,348,626,198 | | 143,084,951,549 | |
| V. 종속기업투자 | 9 | 486,142,349,087 | | 571,666,427,095 | |
| VI. 유형자산 | 10 | 2,353,935,642 | | 2,341,933,896 | |
| VII. 사용권자산 | 11 | 19,284,904,625 | | 24,868,811,277 | |
| VIII. 무형자산 | 12 | 20,480,673,997 | | 25,439,442,468 | |
| IX. 순확정급여자산 | 18 | 3,270,813,416 | | 2,487,432,763 | |
| X. 이연법인세자산 | 29 | 2,020,483,386 | | 2,486,674,976 | |
| XI. 기타자산 | 13 | 2,484,128,434 | | 3,159,504,407 | |
| 자 산 총 계 | | | 1,111,320,048,460 | | 982,888,562,646 |
| 부 채 | | | | | |
| 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4,14,20,33 | - | | 2,181,868,447 | |
| II. 예수부채 | 4,15 | 2,226,837,880 | | 19,382,408,217 | |
| III. 기타금융부채 | 4,16 | 75,601,387,962 | | 68,435,155,942 | |
| IV. 충당부채 | 17 | 270,301,169 | | 257,396,263 | |
| V. 당기법인세부채 | | 34,628,075,272 | | 23,118,382,132 | |
| VI. 기타부채 | 19 | 6,403,107,277 | | 9,848,849,360 | |
| 부 채 총 계 | | | 119,129,709,550 | | 123,224,060,361 |
| 자 본 | | | | | |
| I. 자본금 | 22 | 93,430,000,000 | | 93,430,000,000 | |
| II. 자본잉여금 | 22 | 51,087,628 | | 51,087,628 | |
|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2 | (12,707,456,874) | | (11,330,297,922) | |
| IV. 이익잉여금 | 23 | 911,416,708,156 | | 777,513,712,579 | |
| 자 본 총 계 | | | 992,190,338,910 | | 859,664,502,285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 | 1,111,320,048,460 | | 982,888,562,646 |

# 포괄손익계산서

제28(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27(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당기 | | 전기 | |
|---|---|---|---|---|---|
| I. 영업수익 | | | 391,227,706,607 | | 317,611,426,131 |
| 1. 수수료수익 | 24 | 365,885,210,935 | | 297,640,848,751 | |
| 2. 금융상품 평가 및 처분이익 | 24,28 | 12,346,966,268 | | 12,576,536,894 | |
| 3. 이자수익 | 24,28 | 2,807,256,199 | | 3,194,406,212 | |
| 4. 외환거래이익 | 24,28 | 270,655,783 | | 149,645,034 | |
| 5. 배당금수익 | 24,28 | 9,917,607,428 | | 4,049,989,240 | |
| II. 영업비용 | | | 245,743,109,459 | | 208,097,668,050 |
| 1. 수수료비용 | 25 | 34,322,093,001 | | 34,025,261,942 | |
| 2. 금융상품 평가 및 처분손실 | 25,28 | 20,922,365,727 | | 14,260,501,200 | |
| 3. 이자비용 | 25,28 | 3,050,816,158 | | 3,201,599,926 | |
| 4. 외환거래손실 | 25,28 | 227,916,722 | | 375,618,067 | |
| 5. 판매비 | 26 | 22,458,817,707 | | 20,948,833,610 | |
| 6. 일반관리비 | 26 | 164,748,195,238 | | 135,274,180,715 | |
| 7. 기타비용 | 25 | 12,904,906 | | 10,672,590 | |
| III. 영업이익 | | | 145,484,597,148 | | 109,513,758,081 |
| IV. 영업외손익 | | | 35,973,432,568 | | 10,506,975,450 |
| 1. 영업외수익 | 27 | 41,640,720,714 | | 15,180,943,390 | |
| 2. 영업외비용 | 27 | 5,667,288,146 | | 4,673,967,940 | |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 | 181,458,029,716 | | 120,020,733,531 |
| VI. 법인세비용 | 29 | | 47,555,034,139 | | 30,800,444,754 |
| VII. 당기순이익 | | | 133,902,995,577 | | 89,220,288,777 |
| VIII. 기타포괄손익 | | | (1,377,158,952) | | (1,231,549,885)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1,377,158,952) | | (1,231,549,885) | |
| 1.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1,838,129,517) | | (1,414,526,345) |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21,297,126 | | (186,968,955) | |
| 3.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없는 항목의 법인세 | | 439,673,439 | | 369,945,415 | |
| IX. 당기총포괄이익 | | | 132,525,836,625 | | 87,988,738,892 |
| X. 주당이익 | 31 | | | | |
| 1. 기본주당이익 | | | 7,166 | | 4,775 |

### 라. 운용자산규모

(2026. 6.12 현재/억좌)

| 구분 | 증권 | | | | | MMF | 특별자산 | 부동산 | 혼합자산 | 총계 |
|---|---|---|---|---|---|---|---|---|---|---|
| | 주식형 | 혼합형 | 채권형 | 파생상품 | 재간접 | | | | | |
| 수탁고 | 1,112,944 | 40,405 | 348,546 | 643,639 | 899,202 | 270,083 | 142,372 | 9,435 | 31,478 | 3,498,105 |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가. 신탁회사

(1) 회사 개요

| | |
|---|---|
| 회사명 |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7<br>전화번호 : 1588-1770 |
| 회사 연혁 등<br>(홈페이지 참조) | www.hsbc.co.kr |

(2) 주요 업무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5)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6)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7)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8)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1) 의무

①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그 밖에 법제247조제5항에서 열거하는 사항

2)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연대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개요

| | |
|---|---|
| 회사명 | 신한펀드파트너스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18,19,20층<br>전화번호 : 02)2180-0400 |
| 회사 연혁 등<br>(홈페이지 참조) | www.shinhanfundpartners.com |

(2) 주요 업무

(1) 투자신탁 기준가격의 계산업무 및 공고업무

(2) 투자신탁의 설정·환매요청 접수의 제한에 대한 공고 업무

(3) 납부자산구성내역 등의 공고 업무

(4)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업무

(5)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른 투자신탁 운영과 관련되는 공시 및 공고

(6) 상기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개요

| 회사명 | 한국자산평가(KAP) | 나이스피앤아이(주) | KIS자산평가 | 에프앤자산평가(주)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11층 ( 현대빌딩 ) TEL: 02-2251-1300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여의도동, 대하빌딩 4층) TEL:02-398-39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TEL:02-3215-1416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 중앙2로 61 2층, 3층 TEL: 02-721-5300 |
| 회사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 www.koreabp.com | www.nicepni.com | www.bond.co.kr | www.fnpricing.com |

(2) 주요 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수익자총회

(1) 수익자총회의 구성

1)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2)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의 소집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의결권 행사 방법

①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②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 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

③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서 의결된 찬반비율에 비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은 없습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다만, 신탁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신탁업자는 그러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직전 180일(이하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신탁업자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신탁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탁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신탁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4)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집합투자업자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법률자문료 등)의 합(이하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그 밖에 수익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 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2)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라. 손해배상책임

(1)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135조 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이 상품의 신탁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수익자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업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집합투자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투자신탁의 등록 취소/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일반사모펀드에 한함)법 제 249조의 9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명령을 받은 경우

###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②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③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투자운용인력의 변경/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3) 기타 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다만, 신탁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신탁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의 신탁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탁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신탁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의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⑦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2)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samsungfund.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운용한 집합투자 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 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법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시행령 제24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①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②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2)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4) 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 구분 |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
|---|---|
| 증권의 거래 | - 평가 항목<br>중개거래 시장점유율, 거래관련 자격보유여부, 조직 및 인력현황, 리서치 서비스의 질, 감독기관 제재 및 시정조치 내역, 결제안정성, 시장정보 제공능력, 매매체결의 신속성, 거래관련 보안유지 능력, 세미나 개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br><br>- 선정방법<br>평가방법을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등 중개사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가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
|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 |

##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가. 의무투자

해당사항 없음

### 나. 투자목적의 투자

해당사항 없음

##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 용어 | 내용 |
|---|---|
| **집합투자업자** | 2인 이상 투자자에게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
| **신탁업자** |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
|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
| **개방형(집합투자기구)** |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
| **추가형(집합투자기구)** |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
| **증권집합투자기구** | 투자신탁재산의 50%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
| **기준가격** |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 **레버리지효과** |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
| **보수 또는 총보수** | 투자신탁의 운용, 판매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판매 및 관리 등 집합투자증권 매입, 환매 및 투자기간 중 지속적으로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간접적으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성과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수익자총회** |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됩니다. 만약 이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수익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상 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
| **수탁고** |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
| **원천징수**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
| **설정** |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 |

##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 용어 | 내용 |
|---|---|
| | 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
| **해지** |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
| **환매** |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관련 법령 등에서는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별첨 ]

# 투자자 확인사항

[Samsung Target Date 2060 Index] (the “Index”) is the property of [Samsung Asset Management Co., Ltd.], which has contracted with S&P Opco, LLC (a subsidiary of S&P Dow Jones Indices LLC) to calculate and maintain the Index. The Index is not sponsored by S&P Dow Jones Indices LLC or its affiliates or its third party licensors, including Standard & Poor's Financial Services LLC and Dow Jones Trademark Holdings LLC (collectively, “S&P Dow Jones Indices”). S&P Dow Jones Indices will not be lia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in calculating the Index. “Calculated by S&P Dow Jones Indices” and the related stylized mark(s) are service marks of S&P Dow Jones Indices and have been licensed for use by [Samsung Asset Management Co., Ltd.]. S&P®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Standard & Poor's Financial Services LLC, and Dow Jones®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Dow Jones Trademark Holdings LLC.

본 지수는 [삼성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자산으로, [S&P Opco, LLC(S&P Dow Jones Indices LLC의 자회사)와 지수 산출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삼성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자산입니다. 이 지수는 Standard & Poor's Financial Services LLC 및 Dow Jones Trademark Holdings LLC(총칭하여 “S&P Dow Jones Indices”)를 포함한 S&P Dow Jones Indices LLC 또는 그 계열사 또는 제3자 라이선스 제공자가 후원하지 않습니다. S&P Dow Jones Indices는 지수 산출에 있어 어떠한 오류나 누락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alculated by S&P Dow Jones Indices” 및 관련 양식화된 마크는 S&P Dow Jones Indices의 서비스 마크이며 [삼성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S&P®는 Standard & Poor's Financial Services LLC의 등록상표이며, Dow Jones®는 Dow Jones Trademark Holdings LLC의 등록상표입니다.

This product based on the Index is not sponsored, endorsed, sold or promoted by S&P Dow Jones Indices. S&P Dow Jones Indices does not make any representation or warranty, express or implied, to the owners of the product or any member of the public regarding the advisability of investing in securities generally or in the [Samsung Target Date 2060 Index] or the product particularly or the ability of the Index or the product to track general market performance. S&P Dow Jones Indices’ only relationship to [Samsung Asset Management Co., Ltd.] with respect to the Index is the licensing of the [Samsung Target Date 2060 Index], certain trademarks, service marks and trade names of S&P Dow Jones Indices, and the provision of the calculation services on behalf of [Samsung Asset Management Co., Ltd.] related to the Index without regard to [Samsung Asset Management Co., Ltd.] or the product. S&P Dow Jones Indices is not responsible for and has not participated in the creation of the product, the determination of the prices and amount of the product or the timing of the issuance or sale of the product or in the determination or calculation of the equation by which the product may be converted into cash or other redemption mechanics. S&P Dow Jones Indices has no obligation or liability in connection with the administration, marketing or trading of the product. There is no assurance that investment products based on the Index will

index performance or provide positive investment returns. S&P Dow Jones Indices LLC is not an investment advisor. Inclusion or exclusion of a security within the Index is not a recommendation by S&P Dow Jones Indices to buy, sell, or hold such security, nor is it investment advice. S&P Dow Jones Indices does not act nor shall be deemed to be acting as a fiduciary in providing the [Samsung Target Date 2060 Index].

본 지수를 기초로 하는 본 상품은 S&P Dow Jones Indices가 후원, 보증, 판매 또는 홍보하지 않습니다. S&P Dow Jones Indices는 일반적으로 증권에 대한 투자 또는 본 지수 또는 이 상품에 대한 투자의 타당성, 특히 지수 또는 이 상품의 일반적인 시장 성과를 추종하는 능력에 대해 투자자 또는 일반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S&P Dow Jones Indices와 [삼성자산운용 주식회사]와의 유일한 관계는 본 지수, S&P Dow Jones Indices의 특정 상표, 서비스 마크 및 상품명에 대한 라이선스 및 [삼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또는 상품과 무관하게 지수와 관련된 [삼성자산운용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계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S&P Dow Jones Indices는 상품의 생성, 상품의 가격 및 금액 결정, 상품의 발행 또는 판매 시기 또는 상품을 현금 또는 기타 상환 메커니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식의 결정 또는 계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또한 이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S&P Dow Jones Indices는 상품의 관리, 마케팅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 지수를 기반으로 한 투자 상품이 지수 성과를 정확하게 추종하거나 긍정적인 투자 수익을 제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S&P Dow Jones Indices LLC는 투자 자문사가 아닙니다. 지수 내 증권의 편입 또는 제외는 S&P Dow Jones Indices가 해당 증권의 매수, 매도 또는 보유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조언도 하지 않습니다. S&P Dow Jones Indices는 본 지수를 제공하는 데 있어 신탁자 역할을 하지 않으며, 신탁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P DOW JONES INDICES DOES NOT GUARANTEE THE ADEQUACY, ACCURACY, TIMELINESS AND/OR THE COMPLETENESS OF THE INDEX, INTELLECTUAL PROPERTY, SOFTWARE, OR ANY DATA RELATED THERETO, OR ANY COMMUNICATION WITH RESPECT THERETO, INCLUDING, ORAL, WRITTEN, OR ELECTRONIC COMMUNICATIONS. S&P DOW JONES INDICES SHALL NOT BE SUBJECT TO ANY DAMAGES OR LIABILITY FOR ANY ERRORS, OMISSIONS, OR DELAYS THEREIN. S&P DOW JONES INDICES MAKES NO EXPRESS OR IMPLIED WARRANTIES, AND EXPRESSLY DISCLAIMS ALL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OR USE OR AS TO RESULTS TO BE OBTAINED BY [Samsung Asset Management Co., Ltd.], OWNERS OF THE PRODUCT, OR ANY OTHER PERSON OR ENTITY FROM THE USE OF THE INDEX, INTELLECTUAL PROPERTY, SOFTWARE, OR WITH RESPECT TO ANY DATA RELATED THERETO. WITHOUT LIMITING ANY OF THE FOREGOING, IN NO EVENT WHATSOEVER SHALL S&P DOW JONES INDICES BE LIABLE FOR ANY INDIRECT, SPECIAL, INCIDENTAL, PUNITIVE, OR CONSEQUENTIAL DAMAG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OSS OF PROFITS, TRADING LOSSES, LOST TIME, OR GOODWILL, EVEN IF THEY HAVE BEEN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 WHETHER IN CONTRACT, TORT, STRICT LIABILITY, OR OTHERWISE. THERE ARE NO THIRD PARTY BENEFICIARIES OF ANY AGREEMENTS OR ARRANGEMENTS BETWEEN S&P DOW JONES INDICES AND [Samsung Asset Management Co., Ltd.], OTHER THAN THE LICENSORS OF S&P DOW JONES INDICES.

S&P Dow Jones Indices는 지수, 지적 재산,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 또는 구두, 서면 또는 전자 통신을 포함한 모든 통신의 적절성, 정확성, 적시성 및/또는 완전성

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S&P Dow Jones Indices는 그 오류, 누락 또는 지연에 대해 어떠한 손해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S&P Dow Jones Indices는 특정 목적이나 용도에 대한 상품성 또는 적합성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하지 않으며, [삼성자산운용 주식회사]가 달성할 결과에 관한 모든 보증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삼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본 상품의 소유자 또는 기타 개인이나 법인이 본 지수,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의 사용으로 인해 얻게 되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술한 내용을 제한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S&P Dow Jones Indices는 계약, 불법 행위, 무과실 책임 또는 기타 방식으로 그러한 손해의 가능성에 대해 조언을 받았더라도 이익 손실, 거래 손실, 시간 손실 또는 영업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간접적, 특별, 부수적, 징벌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P Dow Jones Indices와 [삼성자산운용 주식회사] 간의 계약 또는 약정에 대한 제3자 수혜자는 Dow Jones Indices의 라이선스 제공자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투자자 확인사항의 영문 원본과 국문 번역본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영문 원본이 우선 적용됩니다.

Proprietary Investment / Seed Money Risk:
The assets under management at any time during the life of the Product may include proprietary money (or "seed money") invested by one or more interested parties, such as participating dealers, and such investment may constitute a significant portion of such assets under management. Investors should be aware that such an interested party may (i)hedge any of its investments in whole or part, thereby reducing or removing its exposure to the performance of the Product; and (ii) redeem its investment in the Product at any time, without notice to Unitholders. Such an interested party is under no obligation to take the interests of other Unitholders into account when making its investment decisions. There is no assurance that any such monies will continue to be invested in the Product by an interested party for any particular length of time. As many of the expenses of the Product are fixed, a higher amount of assets under management may reduce the expenses of the Product per Unit and a lower amount of assets under anagement may increase the expenses of the Product per Unit. As with any other redemption representing a material portion of the Product's assets under management, a significant redemption of any such proprietary investment may affect the management and/or performance of the Product and may, in certain circumstances (i)cause remaining investors' holdings to represent a higher percentage of the Net Asset Value of the Product, (ii)cause other investors in the Product to redeem their investment, and/or (iii) lead the Manager, with the consultation of the Trustee, to determine that the Product, has become unmanageable and to consider taking exceptional measures, such as terminating the Product, in accordance with the Trust Deed, in which case Unitholders' investments would be redeemed in their entirety.

[번역] 초기투자자본 리스크
본 투자신탁의 신탁자산에는 신탁 존속기간 중 어느 시점에든 단독 또는 복수의 초기 투자자의 투자자본 (이하 "씨딩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전체 신탁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초기 투자자는 본 투자신탁에 대한 위험 노

출을 줄이기 위해 다른 수익자에 대한 통지 없이 언제든지 본 투자신탁의 위험을 헷지하거나 본 투자신탁의 환매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투자결정 시 기타 수익자의 이해관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씨딩금액의 투자기간은 별도로 약정된 기간이 없습니다. 동 투자신탁의 전체 비용 항목 중 투자신탁 총 자산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 고정비용 항목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비용이 투자신탁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신탁자산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여느 수익자 혹은 수익자 집단의 대량환매와 같이 초기 씨딩금액의 일부 혹은 전부 환매청구는 1) 잔존 수익자의 본 투자신탁의 지분율을 상향시킬 수 있고, 2) 잔존 수익자들의 환매청구를 유인할 수 있으며, 3) 이에 따라 규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투자신탁의 해지 및 상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위 투자자 확인 사항의 영문 원본과 국문 번역본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영문 원본이 우선 적용됩니다.